

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별·계층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임
- 나.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 역량 부족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양성을 위해 노무·회계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한 관리 역량 보완 필요
- 다.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훈련(컨설팅) 기능 및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·발굴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단 운영 필요

2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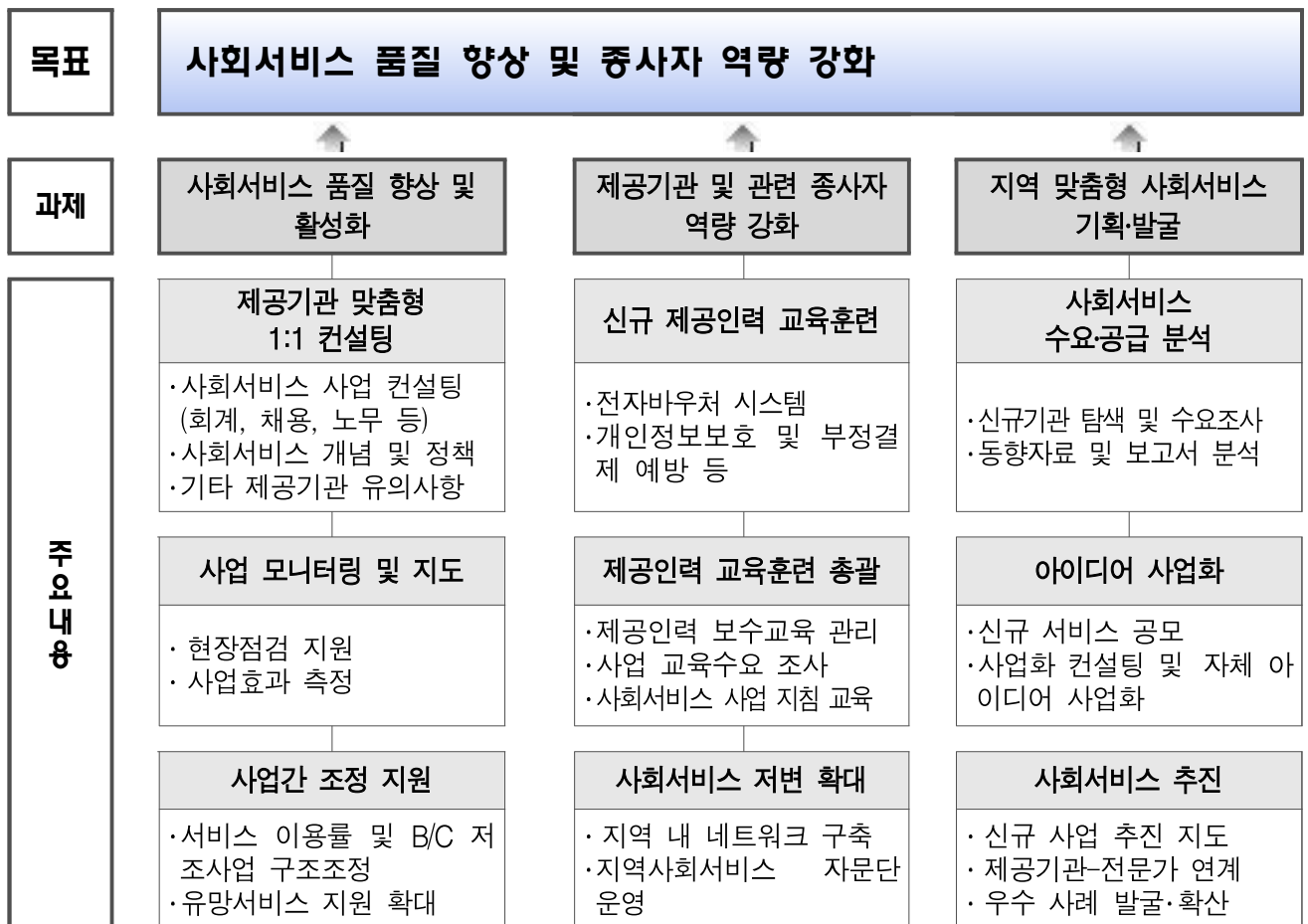
- 가. 위탁 개요
 - 사무명: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
 - 위탁형태: 사무위탁
 - 수탁기관: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
 - 모집방법: 공개모집
 - 위탁기간: 3년('22.1.1.~'24.12.31.)
 - '21년예산: 380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

나. 위탁 목적

-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 및 활성화
-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
-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·발굴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·발굴 및 조사·연구 분석
-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자치구 공무원 교육
-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·훈련 및 관리
-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전문성 강화
-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민관네트워크 구축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* 법률 제31조(교육과 훈련) ②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본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백현기 (☎ 2133-7340)